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3. 13.(월) 조간 (인터넷) 3. 12.(일) 12:00	-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책임자	과 장	정재훈 (044-204-7780)
		담당자	주무관	차상훈 (044-204-7786)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 '23년 정책보험 가입지원 개시…대기업·지자체 연계 시 최대 90% 지원 -

□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부담 완화(기업 가입보험료 부담비율 30% → 10%)

□ 중소기업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 보상범위를 기존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①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②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된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개요(23.3월 현재)**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보장내용</td><td>중소기업기술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
- 국내 소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보험가입자의 담보물에 관련한 분쟁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은 보상불가
<table><tr><th>보 상 가 능 비 용</th><th>보 상 불 가 비 용</th></tr><tr><td>·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td><td>·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 부당이득 반환금
· 벌금, 과료, 과태료
·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td></tr></table></td></tr>
<tr><td>가입대상</td><td>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td></tr>
<tr><td>보험목적물</td><td>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된 권리* 중 최대 3개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td></tr>
<tr><td>보험기간</td><td>보험가입일로부터 1년(단기), 3년(장기)</td></tr>
<tr><td>상품구성</td><td>-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 구성
<table><tr><th>구분</th><th>피 소 대 응(기본)</th><th>소 제 기(특약)</th></tr><tr><td>내용</td><td>· 보험가입자 담보물(기술, 권리)에 대해 타인(타사)이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대응, 침해소송 대응,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td><td>· 보험가입자의 담보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변호사 선임 등</td></tr><tr><td>보장금액</td><td>최대 5천만원</td><td>최대 5천만원</td></tr><tr><td>보험효력</td><td>가입 즉시</td><td>(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td></tr><tr><td>보험료</td><td>약 110~200만원(산업별·매출별 상이)</td><td>약 150~250만원(산업별·매출별 상이)</td></tr><tr><td>보험료 할증, 할인</td><td colspan="2">· 최근 5년간 기술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
· 3년 계약 시 연 요율의 250% 적용
· 30개사 이상 동시(단체) 가입 시 10% 할인</td></tr></table></td></tr>
<tr><td>보상조건</td><td>기술분쟁과 관련 있는 민·형사소송 사건으로 보험기간 이내 발생(법원에 訴가 접수된) 사건</td></tr>
<tr><td>자기부담금</td><td>무분별한 사고(분쟁) 유발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청구방지를 위해 사고청구 당 보험가입자의 부담비율 설정(10%)</td></tr>
<tr><td>판매보험사</td><td>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td></tr>
</table>